# (15-015) ○호선 ○○역 진입로 공사장 크레인 마스터 붐 꺽임 사고

공사명	○호선 ○○역 출입시설 설치공사				
사고일시	2015년 10월 07일(수) 10:41분경		기상상태	맑음	
소재지	서울시 강서구 가양동	사고 종류	파단	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부상 1명		
장비 손실	이동식크레인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 ○ ), 해당없음(		)

#### Ⅱ 공사개요

- o 공사종류: 기타
- o 규모: 출입구 4개소 및 통로 1개소

### ② 사고경위

### 사고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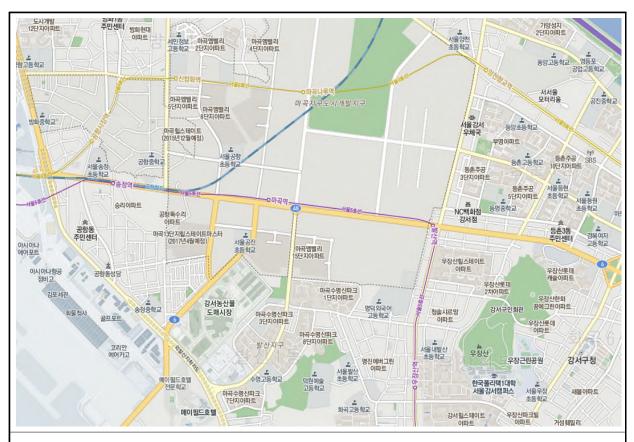
o 마곡역 5번 출입구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시트파일을 구조물공사(출입계단 및 에스컬레이터)를 완료하고 되메우기 완료 후 시트파일을 인발 작업 중 크레인의 마스터 붐 중간이 꺾이면서 근로자 1명 부상.

#### ③ 사고원인

o 크레인에 설치된 진동햄머의 힘으로 시트파일을 인발하는 중 시트파일이 인발이 잘 되지 않자 크레인기사가 크레인의 힘으로 인발력을 주려고 당기자 붐이 꺾임.

# 재발방지 대책

- o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(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)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o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 최대의 정격하중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실시할 때에 시험하중에 맞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o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(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)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o 고정된 구조물의 제거 또는 철거 작업 등에 이동식 크레인 사용 금지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 전경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